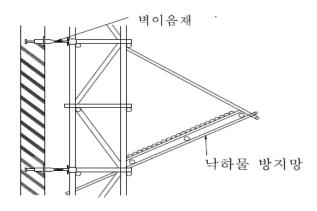
- (5) 외측에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하중이나 작업하중과 같은 수 직하중 이외에 풍하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6) 비계에 낙하물방지망,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 <그림 4>과 같이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4> 벽이음 보강(참조그림)

7.8 작업발판

- (1)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 cm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 cm 이상 20 cm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발판을 이동시킬 때에는 추락방지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7.9 안전난간

(1)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야 한다.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,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